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유영선 소유물건(2025타경51543)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서번호: 청주25-0806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남 장 우 (인)
남 장 우

감정평가액	삼억이백사십삼만팔천일백원정(₩302,438,1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영선 (2025타경5154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20	2025.08.18 ~ 2025.08.20	2025.08.2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104	토지	1,164.69	-	302,438,100
	토지	1 971x-- 16 이	하	여	백	
합 계					₩302,438,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소재 "내성동마을" 남동쪽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청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요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평가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8월 20일임.

3. 감정평가 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 감정평가의 실지조사는 2025.08.18.에 시행하였으며, 평가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III. 그 밖의 사항

- ① 지적경계 등은 목적에 의거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② 본건 일련번호 1)과 3)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 후 토목공사 중인 것으로 탐문되는 바, 경매 입찰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③ 본건 일련번호 1)과 3)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서 일단으로 이용 중이며, 그 이용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 ④ 본건 일련번호 2)는 공유지분소유의 토지로서, 그 중 유영선 지분만의 평가로 면적사정은 등기사항 증명서 상 지분비율에 의하였고,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전	계획관리지역	654	654	269,000	175,926,000	일단지 평가
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16-2	도로	계획관리지역	1 971x-- 16	60.69	90,000	5,462,100	유영선 지분
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산71-5	임야	계획관리지역	450	450	269,000	121,050,000	일단지 평가
합 계								₩302,438,1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일련번호 1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전	면적	654m ²	이용상황	토목공사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일련번호 2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16-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도로	면적	971m ²	이용상황	도로



3. 일련번호 3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산71-5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임야	면적	450m ²	이용상황	토목공사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내성리 509	654	전	토목 공사 중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9,500
2	내성리 516-2	971 × 1/16	도로	도로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1,800
3	내성리 산71-5	450	임야	토목 공사 중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5,6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A	남하리 158	439	대	단독 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 지	66,300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지가변동률(%)	비 고
0.540	<p>충청북도 증평균 (25.01.01~25.08.20) (계획관리)</p> <p>2025.01.01 ~ 2025.06.30 : 0.436 2025.06.01 ~ 2025.06.30 : 0.061</p> <p>$(1 + 0.00436) * (1 + 0.00061 * 51/30) \approx 1.00540$</p>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본건의 현황 및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택지후보지지대> 적용함.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표준지A	본건1,3	
가로 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1, 3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와의 접근성 및 편의성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1, 3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교통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및 접근성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1, 3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인근환경	주변 기존지역의 성격 및 규모			
	위험시설	변전소, 가스탱크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혐오시설	오수처리장, 오염발생시설, 축사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1, 3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택지 조성 조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성	택지조성의 난이도 및 필요정도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1, 3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택지로서의 유효이용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0.87	본건1, 3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상의 규제 등에서 열세함.
		조장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00	0.87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조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표준지A	본건2	
가로 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2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와의 접근성 및 편의성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2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교통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및 접근성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접근성			
환경 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2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인근환경	주변 기존지역의 성격 및 규모			
	위험시설	변전소, 가스탱크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혐오시설	오수처리장, 오염발생시설, 축사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2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택지 조성 조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성	택지조성의 난이도 및 필요정도	1.00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2 토지는 대체로 대등함.
		택지로서의 유효이용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0.29	본건2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상의 규제 등에서 열세함.
		조장의 정도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00	0.29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m ²)	비고
인근 택지후보지	근교 전원주택지대	세로변	240,000~280,000 수준	-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감정평가사례

최근 5년 이내 본건 감정평가사례는 조회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감정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덕상리 2-1	계획관리	대	2020.11.30	경매	245,000	-
의 견 본건(1, 3)이 평가사례 대비 가로·획지조건에서 우세,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 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1	덕상리	계획관리	총 61,298,750 원	2022.03.18	261m ²	-
	535-13	전	(@ 234,861 원/m ²)	-	-	
의 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61,298,750원/ 261m ² ≒ 234,861원/m ²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바) 경매 동향

지 역	기 간	용 도	낙찰건수	평균 낙찰가율
증평균	최근 1년	단독주택	4 건	68.88 %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감정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비교표준지A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245,000	1.07790	1.000	1.169	308,716	4.631	4.63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66,300	1.00540	-	-	66,658		

¹⁾평가사례 : 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감정평가사례(1)을 선정함.

²⁾시점수정 (2020. 11. 30 ~ 2025. 08. 20, 증평균 계획관리지역) : 7.790% (1.07790)

³⁾지역요인 : 평가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평가사례 대비 비교표준지가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개별요인 비교치						격차율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1.05	1.05	1.00	1.06	1.00	1.00	1.169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적정성 검토 의견

상기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을 비교·검토할 때, 상기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지가변동추이 및 부동산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음.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원/m ²)	비고
	기호	공시지가 (원/m ²)							
1	A	66,300	1.00540	1.000	0.870	4.63	268,505	269,000	-
2	A	66,300	1.00540	1.000	0.290	4.63	89,502	90,000	-
3	A	66,300	1.00540	1.000	0.870	4.63	268,505	269,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일련번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3 / #1	1.05	1.05	1.00	1.00	1.00	1.00	1.103
2 / #1	1.05	1.05	1.00	1.00	0.33	1.00	0.364

* 본건1, 3/사례#1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공공·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 본건2/사례#1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공공·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며, 행정적 조건(행정상의 규제 정도 등)에서 열세함.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234,861	1.00	1.03895	1.000	1.103	269,142	269,000
2	#1	234,861	1.00	1.03895	1.000	0.364	88,819	89,000
3	#1	234,861	1.00	1.03895	1.000	1.103	269,142	269,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1	269,000	269,000	-
2	90,000	89,000	-
3	269,000	269,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
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계	302,438,100 원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감정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그 밖의 참고사항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소재 "내성동마을" 남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소규모공장,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36호선), 간선도로(보건복지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간격, 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일련번호 1) 및 3)은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 후 토목공사 중이며, 일련번호 2)는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3) : 본건 북쪽으로 노폭 6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 본건이 도로임.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소, 말(900㎡미만 신고대상), 사슴, 양(염소, 산양)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소, 말(900㎡미만 신고대상), 사슴, 양(염소, 산양)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소, 말(900㎡미만 신고대상), 사슴, 양(염소, 산양)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1)의 지목은 '전', 일련번호3)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택지후보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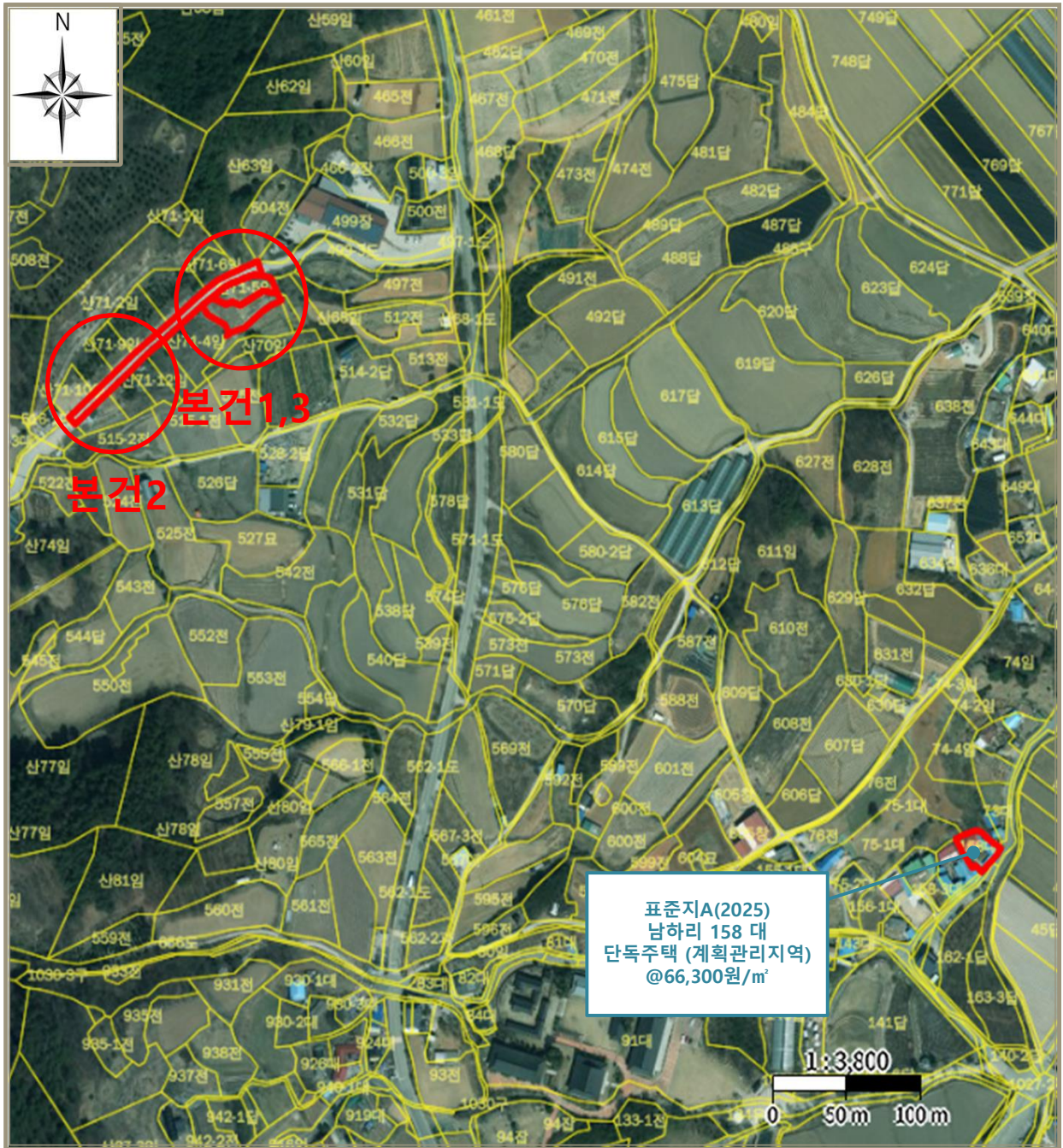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가격 참고도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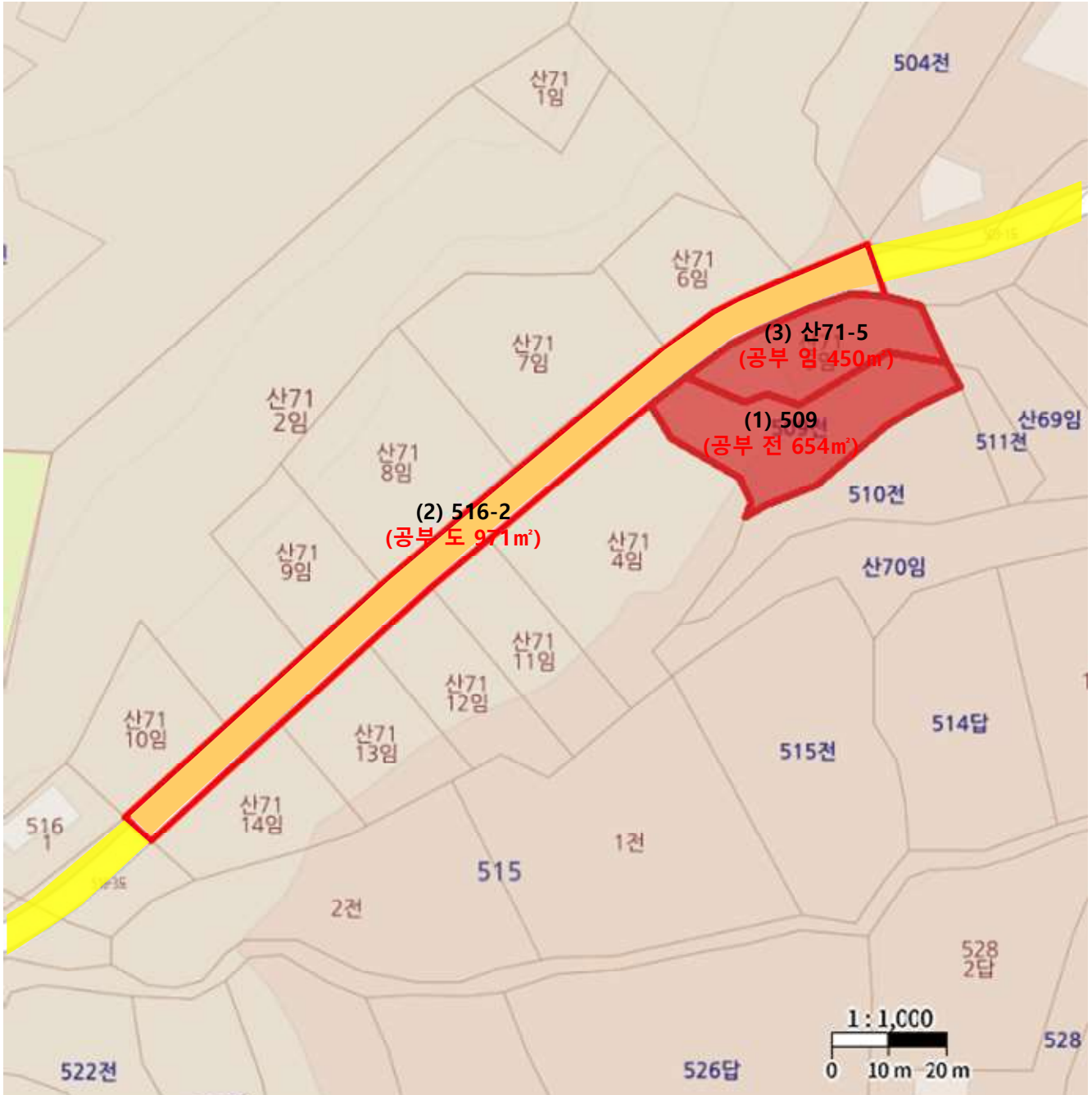


- [범 레]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레
- 거래사레

지적 개황도

N
4
S

S : 1 / 1000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본건1), 3) 전경



본건1)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본건2) 전경



본건2)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본건3) 전경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09, 516-2, 산71-5



주위환경



주위환경
